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736 발의연월일: 2025. 4. 11.

발 의 자: 김주영·박홍배·이학영

김태선 • 박 정 • 박상혁

이용우 • 박균택 • 허성무

양문석 • 이정문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 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%를 경감하는데,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촉발된 식량 주권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유지하여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고 후계농어업인의 유입 및 육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따라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며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	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			
관련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	관련 감면 등) ①			
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				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				
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				
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				
농어업인[영농조합법인, 영어조				
합법인(營漁組合法人) 및 농업				
회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				
조에서 같다]에게 융자할 때에				
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				
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				
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)에 대				
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				
50을 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지 경	<u>2027년 12월 31일</u>			
감한다. 다만, 중앙회, 농협은행				
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				
자금·영어자금·영림자금(營林資				
金)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				
경우로 한정한다.	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	